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 안 요 청 서

2019. 6.



# 목 차

##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1절 사업의 요약 .....	1
제2절 제안요청의 개요 .....	1
1. 목적 .....	1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	2
제3절 주간운용사에 대한 설명 .....	3
1. 주간운용사 선정의 목적 .....	3
2. 사업위탁의 구조 .....	3
3. 주간운용사의 역할 및 사무 .....	3
4. PIS 펀드 운용구조 및 규모 .....	5
5. PIS 펀드의 투자정책 .....	7
6. 제안형 펀드 개요 .....	9
7.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 .....	10
(1) 사업계획서 제출 .....	10
(2) 계약보증금 .....	10
(3) 사업운영기간 .....	10
(4) 보수율 .....	10
(5) 주간운용사의 매입약정의무 .....	12
(6) 주간운용사의 하위운용사 선정 동시 지원 불가 .....	12
(7) 해외건설집합투자업자 인가 .....	12
(8) 운영조직과 전문인력 등의 준비 .....	12
(9) 시스템 등의 준비 .....	12
(10) 제안서 이행여부 점검 .....	12

(11) 주간운용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	13
8. 추진일정 .....	13
9. 접수 및 제출처 .....	14
10. 문의처 .....	14

##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	15
1. 제안업체 자격요건 .....	15
2. 기타 요건 .....	16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17
1. 제안서 유의사항 .....	17
(1)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	17
(2) 제안요청 관련 KIND의 면책사항 .....	17
(3)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	17
(4) 제안요청서의 철회 .....	18
(5)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	18
(6) 입찰공고 .....	18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 .....	18
(8)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 .....	19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20
(1) 제안서 작성체계 .....	20
(2) 제안서 작성요령 .....	20
(3) 제안서 구성 및 목차 .....	22
(4) 제안서 제출요령 .....	23
(5) 제안서 수정 .....	24

(6) 제안설명회 .....	25
(7) 제안서의 효력 .....	25
(8)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 .....	25
(9) 제안업체 정보의 비밀유지 .....	25
(10) 제안서 작성비용 .....	26

### 제3장 제안서 평가부문 구성

제1절 기술능력 부문 .....	27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	27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	27
제2절 가격(보수율) 부문 .....	28

### 제4장 제안서 평가

제1절 주간운용사 선정 .....	29
1. 주간운용사 선정원칙 .....	29
2. 주간운용사 선정절차 .....	30
제2절 평가 .....	33
1. 평가의 개요 .....	33
(1) 평가의 기본 목적 .....	33
(2) 평가의 기본 방침 .....	33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	33
2. 평가항목 및 배점 .....	36
붙임 1. 주간운용사 선정 정량평가 세부기준 .....	39
붙임 2. 주간운용사 선정 정성평가 세부기준 .....	46
붙임 3. 표준화점수법 .....	50
붙임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51

#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 제1절 사업의 요약

- 사업명 :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주간운용사 선정
- 주관기관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펀드관리전문기관)
- 위탁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단, 위탁사업기간의 기산일은 계약에 의거 조정 가능)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 사업예산 : 설정액 0.20% (부가가치세 포함)

## 제2절 제안요청의 개요

### 1. 목적

-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해외수주활력제고 및 수출활력제고를 위해 해외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수출을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모태펀드인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이하 ‘PIS 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본 제안요청서는 1단계 1.5조원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 PIS 펀드는 우선 1단계로 정부재정 1,500억원과 공공기관의 투자 참여분 4,500억 원으로 조성된 모태펀드 6,000억원에 민간투자자 투자금 9,000억원을 매칭하여 총 1.5조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 본 제안요청서는 PIS 펀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펀드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하 ‘KIND’)가 PIS 펀드 조성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PIS 펀드를 운용 및 관리하고, KIND와 모태펀드 투자자에게 포괄적 자문서비스를 수행할 주간운용사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간운용사는 PIS 펀드의 투자 방향을 담은 투자정책서를 바탕으로 모태펀드를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방식으로 운용하며, 해외 인프라 시장리서치, 투자전략 제안 등 PIS 펀드 운용 전반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 KIND는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PIS펀드의 주간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본 제안요청서를 통해 주간운용사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제안업체’)가 KIND에 제안할 내용, 제안방법 및 형식, 일정, 제안업체의 사전 이해에 필요한 사항 및 제안서 평가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 2.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구성

- 본 제안요청서는 주간운용사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사업의 내용과 위탁구조 및 조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사업추진 및 주간운용사 선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정, 주간운용사 전담조직을 포함하는 제안요청 사항, 제안서 평가 및 주간운용사의 선정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본 제안요청서는 제1장 제안요청의 개관,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3장 제안서 평가부문 구성, 제4장 제안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제3절 주간운용사에 대한 설명

- 제안업체는 PIS 펀드 설립 목적, 운용 체계, 주간운용사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간운용사 선정의 목적

- 주간운용사는 정책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하위펀드 운용전략을 수립하여 PIS 펀드를 운용·관리한다.

### 2. 사업위탁의 구조

- PIS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펀드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KIND는 PIS 펀드의 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 존속기간인 30년 간 PIS 펀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펀드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 KIND는 본 공고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을 담당할 주간운용사를 선정하여, 선정된 주간운용사에 모태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위펀드(제안형 펀드)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계획이다.
- PIS 펀드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주간운용사는 모태펀드 및 하위펀드(제안형 펀드)로부터 각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으며, 모태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에는 주간운용사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의 투자비 및 위탁사업기간 동안의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 3. 주간운용사의 역할 및 사무

- KIND는 모태펀드를 위탁운용하는 주간운용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주간운용사는 모태펀드 운용 및 제안형 펀드의 운용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 이 경우 주간운용사는 주간운용사의 사무에 기술된 해당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

□ 주간운용사의 모태펀드 운용 관련 사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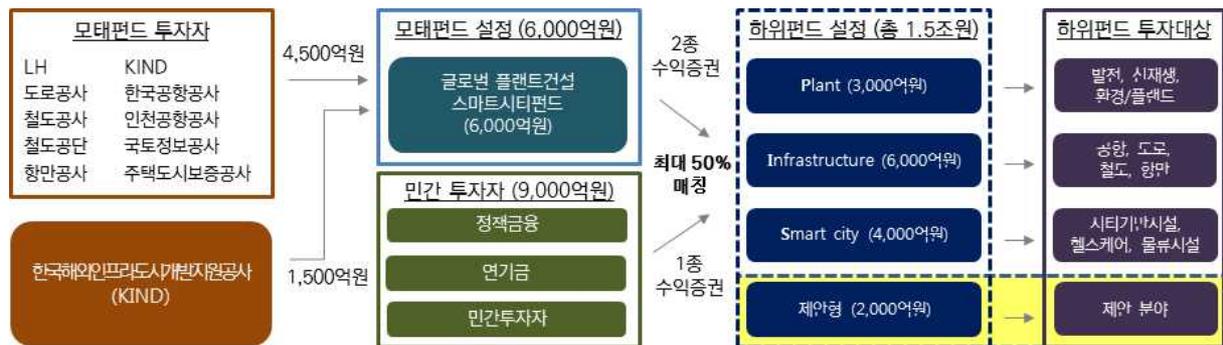
1. 모태펀드 설정 관련 행정처리 수행
2. 모태펀드 투자정책에 따른 투자 가이드라인, 자산 편입기준, 자산 배분 정책 등 하위펀드별 세부투자지침 수립
3. 모태펀드 투자정책에 따른 연간 운용계획 수립 및 제출
4. 하위펀드를 운용할 하위운용사 선정 및 설정
5.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된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6. 하위펀드 운용상황 보고 (회계 보고, 사업보고회 등 정기·수시 보고)
7. 하위펀드 성과평가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선정·관리)
8. 기타 관계법령 및 펀드운영협의회 등에서 정하는 사무

□ 주간운용사의 제안형펀드 운용 관련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펀드설립신고 등 펀드 조성과 관련된 업무
2.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발굴, 금융 구조화
3.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 및 자산관리
4. 국내 정책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투자 협력
5. 펀드와 관련되어 발굴된 해외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문

## 4. PIS 펀드 운용 구조 및 규모

- PIS 펀드는 재간접펀드(Fund of Funds)의 방식으로 운용되며, 공공기관 투자자로 구성된 모태펀드를 민간투자자 투자분에 매칭 투자하여 하위펀드를 구성할 계획이며, 모태펀드 투자자 구성 및 운용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sup>1)</sup>



- 본 펀드 운용에 있어 펀드운영협의회는 주요 의결기구로서 운용계획 심의 및 결산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펀드관리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정책 및 연간 분기별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본 펀드 운용의 틀과 방향을 정한다.
- 펀드관리전문기관은 펀드운영협의회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주간운용사 및 운영지원기관 선정, 운용 관련 투자정책서 수립 및 조정, 운용상황에 대한 관리·점검 및 감독, 자금의 배정·회수 총괄 업무 등을 수행한다.
  - 펀드관리전문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 본 펀드를 통합 관리하는 주간운용사 ▲ 이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하위운용사가 있고 ▲ 투자자산의 보관·관리 등을 수행하는 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가치 및 기준가 산출 등을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다.
  - 주간운용사는 투자전략·결정 지원, 펀드 제안·모니터링·위험관리 등 포괄적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운용사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 운용 전략 자문 ▲ 펀드설정 및 모니터링 ▲ 위험관리·성과평가 기능을 구분하여 수행한다.

1) 현재의 계획안이며 최종 투자기관 및 투자액은 변경 가능

□ 주간운용사는 다음의 하위펀드 투자분야 및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주간운용사 선정 입찰에 지원하고, 동 내용을 운용전략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하위펀드의 투자분야는 플랜트(Plant), 인프라(Infrastructure), 스마트(Smart city) 분야와 주간운용사가 제안하고 운용하는 제안형 펀드 분야로 구성되며, 투자분야 별 최대 투자비율, 모태펀드 최대 투자액, 하위펀드 조성 목표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구분	최대 투자 비율	펀드 약정액			투자분야
		모태펀드	민간 투자자	하위펀드	
P/ 플랜트	40%	1,200	1,800	3,000	발전, 신재생, 환경/플랜트
I/ 인프라	40%	2,400	3,600	6,000	공항, 도로, 철도, 항만
S/ 스마트	45%	1,800	2,200	4,000	시티기반시설, 헬스케어, 물류시설
제안형 (주간운용사)	30%	600	1,400	2,000	제안 분야
합 계		6,000	9,000	15,000	

\* 현재의 계획안이며 최종 내용은 변경 가능

## 5. PIS 펀드의 투자정책

- 주간운용사는 모태펀드의 운용에 있어 다음의 투자정책을 충실히 반영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는 이에 관한 내용을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기술에 기재하여야 한다.
- PIS 펀드는 다음의 운영체계에 따라 운영되며, 주간운용사는 다음의 운영체계를 참고하여 운용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PIS 펀드 운영체계도(안)**

운영 단위	운영 주체	운영 기구			
펀드 관리 전문기관	KIND	펀드운영협의회	성과평가 위원회	선정 위원회	
모태 펀드	주간운용사	운용위원회	자문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수익자총회
하위 펀드	하위 운용사	운용위원회	자문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수익자총회

- 모태펀드는 하위펀드의 투자대상, 투자한도, 자산배분, 손실부담순위, 초과이익 배분의 조건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자한다.

**PIS 펀드 투자정책서 (안)**

구 분	주요내용
의무 투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기업이 계약을 통한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국가신용도 Ba3/BB-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해외 인프라 투자개발 사업에 투자한다.</li> <li>▪ 단, 국가신용도 Ba3/BB- 미만의 국가에 대한 투자는 수요위험 제한, 신용 보강,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제한적인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li> </ul>

자산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운용사는 의무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하한*,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 한도, 투자대상별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여야 한다.</li> <li>* 주간운용사 선정 후 별도 협의</li> </ul>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는 하위펀드 설정액 대비 50% 이내에서 하위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li> </ul>
손실부담 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하위펀드 운용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하여 해당 하위펀드에 납입한 모태펀드 투자금액을 한도로 우선 부담할 수 있다.</li> <li>▪ 모태펀드 운용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하여 정부출자분의 모태펀드 납입금액을 한도로 KIND가 우선 부담할 수 있다.</li> </ul>
초과이익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하위펀드 운용에 따라 사전에 설정한 초과수익률 이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정부출자분, 공공기관 출자분, 민간투자자 출자분 간 차등하여 배분할 수 있다.</li> </ul>

- 상기의 투자정책은 투자자 간 협의체인 펀드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추후 확정된 투자정책을 반영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펀드운영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제안형 펀드 개요

- 제안형 펀드는 주간운용사 전용 분야이며, 제안업체는 다음의 제안형 펀드 개요를 참조하여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기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안형 펀드 주요 투자조건

구 분	주요내용
펀드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신탁형, 사모형, 폐쇄형, 환매금지형, 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li> </ul>
투자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인프라, 발전 및 발전 관련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법인 또는 그 법인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유가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Mezzanine 등을 포함) 등 자본시장법 및 해외건설촉진법 상 기초자산</li> </ul>
모태펀드 최대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투자 한도 600억원 (총 설정액의 30% 이내)</li> </ul>
펀드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0억원 이상</li> </ul>
신탁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설정 후 15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2년 연장가능)</li> <li>신탁계약기간 종료 이전에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 및 매각으로 상환금 및 매각대금이 모두 회수되는 날</li> </ul>
매입약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수익자 전원 동의 시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라인드 펀드, Capital Call 방식</li> </ul>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운용보수 및 성과보수 구조로 제안</li> <li>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따름</li> </ul>
목표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따름</li> </ul>

- 제안형 펀드 운용인력은 모태펀드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PIS 펀드 전담운용업무를 겸할 수 없다.

## 7.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

### (1) 사업계획서 제출

- 협상적격자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 협상 종료 후 7일 이내에 승인요건을 갖추어 KIND에 사업 및 시스템 개발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제한기일은 KIND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2) 계약보증금

- 주간운용사는 사업운영기간 동안 관련 법령 및 펀드운영협의회와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의 중도 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기간동안 주간운용사에게 지급할 대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의 형태로 펀드관리전문기관(KIND)에 제출한다.

### (3) 사업운영기간

- 주간운용사의 사업운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4) 보수율

- 주간운용사의 보수는 ①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 및 ②제안형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로 구분된다.
  -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는 ①기본운용보수와 운용성과에 따른 ②성과보수로 구성되며, 이 중 기본운용보수 만이 가격입찰의 대상이 된다.
  - 기본운용보수는 제안업체가 사업예산인 20bp (0.2%) 이내에서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입찰시스템을 통해 제안한다.

- 성과보수는 ①수익성 기준과 ②투자소진율 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며,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기술에 각 목표치를 기재하여야 한다.
- 수익성 기준: 계약기간 내 실현수익률이 목표수익률 (보수 차감 후) 기준 A% 이상 달성 시, 초과 수익의 B%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단, 실현수익률은 모태 펀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 확정된 현금 흐름만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기술에 기재한다)
- 투자소진율 기준: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에서 제안서 내 운용전략으로 제시한 연도별 목표 투자소진율의 각 연도별 달성 정도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지급한다.

### 투자소진율 성과보수 예시

(단위: %, 억원)

구분	운용기간 <sup>주2)</sup>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sup>주3)</sup>	
연간 목표 투자소진율 <sup>주1)</sup> (A)	15%	20%	25%	30%	10%	100%
성과보수 지급한도 (B) = (A) * <b>5억원</b>	0.75	1	1.25	1.5	0.5	5
연간 실제 투자소진율 (C)	5%	15%	25%	35%	20%	100%
성과보수 지급액(D) = min[(B), 5억원*(C)]	0.25	0.75	1.25	1.5	0.5	4.25

주1) 제안회사는 연도별 목표소진율을 제안서 2권 정성평가 운용전략 부문에 포함하여 제안서 작성

주2) 각 연도 미소진 성과보수(목표 투자소진율 - 실제 투자소진율)는 소멸하며, 각 연도 성과보수 지급한도액은 연간 목표소진율 \* **5억원**으로 설정

주3) 최종 운용기간(5년 차) 목표소진율은 20% 이내에서 제안해야 함

- 제안형 펀드 운용에 대한 보수는 해외 인프라 투자 펀드의 시장 운용보수율 수준을 고려하여 제안서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기술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5) 주간운용사의 매입약정의무

- 주간운용사는 제안형 펀드에 대해 최종 설정액 대비 1% 이상 매입 약정하여야 한다.

### (6) 주간운용사의 하위운용사 선정 동시 지원 불가

- 주간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하위운용사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주간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81조의 자산운용의 제한 규정 준수를 전제로 제안형 펀드의 하위운용사 지위를 겸할 수 있다.

### (7) 해외건설집합투자업자 인가

- 주간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4주 이내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집합투자업자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 (8) 운영조직과 전문인력 등의 준비

- 주간운용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조직과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주간운용사는 선정통보일로부터 4주 이내에 용역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9) 시스템 등의 준비

- 주간운용사는 PIS 펀드 운용 관련 시스템,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연계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주간운용사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10) 제안서 이행여부 점검

- KIND는 선정된 주간운용사에 대한 제안서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서 이행점검결과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펀드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주간운용사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 (11) 주간운용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

- KIND는 주간운용사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담당 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는 펀드운영협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관의 지위 해제, 손해배상 청구, 기관경고, 주의촉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주간운용사가 준비 부족 등으로 최대 4개월(3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 이내 업무개시 관련 펀드운영협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와 제안내용에 대하여 매년 펀드관리전문기관의 이행 점검결과 제안내용과 다르게 운용될 경우 펀드운영협회의 심의를 거쳐 주간운용사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 업무개시의 판단 기준은 모태펀드 등록여부로 한다
- 주간운용사는 관계 법령, 펀드 운용과 관련된 제 규정 및 펀드운영협회 의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8. 추진일정

- 주간운용사 선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의 일정은 KIND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입찰공고(재공고) : 2019년 6월 7일(금)
  - 사업설명회 : 입찰공고에 의함
  - 입찰 관련 문의 마감 : 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메일 문의만 가능)
  - 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 마감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설명회 및 평가 : 입찰공고에 의함
  - 평가결과 통보(협상대상자 통보) : 제안서 기술평가 후

- 위수탁계약 체결 : 협상대상자 선정 후 3개월(연장 1개월) 이내 펀드운영협의회의결 후 진행, 추후 통지
- 주간운용사 업무개시 : 계약체결일

## 9. 접수 및 제출처

- 접수 및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서 등 입찰서류 접수 후 방문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가격제안서 접수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
- 제안서 제출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hree IFC 50층,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2019.6.18. 09:00 ~ 10:00 접수마감일 당일만 원본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대리 접수는 불가 (사전 출입등록을 위해 제출자 성명, 휴대폰 번호, 예상방문시각을 기재하여 [invest@kindkorea.or.kr](mailto:invest@kindkorea.or.kr)로 회신)

## 10. 문의처

- 입찰공고 게시 후 제안서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만 가능함
- 제안서 작성 및 접수·제출 관련 문의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관리본부 ([invest@kindkorea.or.kr](mailto:invest@kindkorea.or.kr))

##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1절 제안업체 자격요건

#### 1. 제안업체 자격요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중에서 2018년 12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운용실적이 있는 집합투자업자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운용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의 수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갖춘 운용인력 2인 이상

---

◆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룸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자격을 갖춘 후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 조사분석인력 1인 이상

○ 위험관리인력 1인 이상

□ 제안업체는 모태펀드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PIS 펀드 전담운용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전담운용팀은 경력 5년 이상 1명, 3년 이상 1명 등 운용인력 2인 이상으로 구성

- PIS 펀드 전담운용팀에 참여할 인력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4권에 제출하여야 함
- PIS 펀드 전담운용인력이 향후 이직 예정인 경우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상기의 운용인력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운용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 해당자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인력 확인서류(투자자산운용사) 제출
-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은 조사분석(리서치) 및 위험관리(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으로 한정
  - \* 해당자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와 부서명,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단, 필요 시 부서발령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공문으로 대체 가능)
- 경력은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 (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 상기 인력의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통해 확인
- 해외지사 근무인력도 전담 운용인력으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으나, 업무개시 이후부터는 국내에 상주하여야 함

## 2. 기타 요건

- 제안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요건 및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사전규격공고 이후부터 PIS 펀드 운영과 관련된 주제로 용역을 수행한 연구용역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 PIS 펀드 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없다.

## 제2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1. 제안시 유의사항

#### (1) 제안요청서의 이해와 확인

- 본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모든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양식 등을 완벽하게 검토이해하고 제안 요건의 수용을 전제하여 응찰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의 요청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 (2) 제안요청 관련 KIND의 면책사항

- KIND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따라서 제안업체가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법적 타당성 및 해석상의 차이 등을 사유로 KIND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KIND는 법령의 개폐 및 정책의 변화에 의해 PIS 펀드의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 KIND는 최종 제안서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KIND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www.g2b.go.kr](http://www.g2b.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제안요청서의 수정 및 보완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으며, KIND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 수정에 따라 작성기간의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IND는 제안서 수정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접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 (4) 제안요청서의 철회

- KIND는 PIS 펀드 주간운용사의 자격에 부합되는 제안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를 발부한 이후에도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수 있으며 KIND는 이러한 철회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KIND가 제안요청서를 철회할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및 공사 홈페이지(www.kindkorea.or.kr)를 통해 철회 사실을 공지한다.

#### (5) 제안요청서의 소유권

- 본 제안요청서는 주간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본 제안요청서의 소유권은 KIND에게 있다.

#### (6)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KIND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공고한다.
  - 제안업체는 KIND의 제안요청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평가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방문 질의는 불허하며, 이메일(invest@kindkorea.or.kr)을 통해서만 질의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10일간 가능하다.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KIND는 5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KIND는 익명의 질의나 KIND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KIND가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KIND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은 관련 KIND의 해석에 따른다.

### (8) 제안업체에 대한 금지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요청 등과 관련하여 위 ‘(7) 제안요청서 관련 질의 및 회신’에서 정한 내용 이외에 제안서 작성 및 제출기간, 제안서 평가기간 중에 PIS 펀드운영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위원, KIND 및 관련 주무부처 임직원, 선정 기준 관련 연구용역자를 사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체는 제안업체 자격 또는 위수탁 계약체결 이후에도 주간운용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위수탁 계약상의 지위 박탈,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한다.
  - 불법·부당한 정보획득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KIND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 제안서 허위작성 및 기망행위, 입찰담합, 부정행위, 부적격자 사업참여 등으로 인하여 KIND의 신뢰가 실추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는 입찰공고일 이전 본 건과 관련하여 KIND가 발주한 용역(운영기관 선정기준 마련 등)을 수행한 기관 및 그 기관의 종사자, PIS 펀드 운영 관련 위원으로부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컨설팅을 받을 수 없다.

##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는 업무위수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 따라서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한 PIS 펀드 주간운용사 선정목적, 사업의 위탁구조, 주간운용사의 역할, PIS 펀드의 운용구조,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 주간운용사 선정 절차 및 자격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 (1) 제안서 작성체계

- 제안서 심사 및 평가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모든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제안요청의 내용을 작성하고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 “제3장 제안서 평가부문 구성”의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주간운용사 선정”이라는 제목 하에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제안,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제3권 첨부서류 등으로 하위 제목을 구성하여 작성한다.

### (2) 제안서 작성요령

- 자료작성 기준일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018년 12월말(최근 연말 결산일)을 기준을 원칙으로, 2018년도 말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기준일을 표기하여야 한다.

#### 1) 인쇄 및 제본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양면으로 흑백 또는 컬러로 인쇄하며, 제안서 각 권을 따로 책자로 제본한다.

## 2) 언어

- 제안서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외래어 표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영문, 한문을 사용할 수 있다.

## 3) 목차 및 쪽 표시

- 제안서에는 목차 및 쪽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4) 제안서 분량

- 제안내용은 중요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은 30분 이내 발표할 분량으로 작성한다.

## 5) 제안서류상의 원본확인 및 서명

- 제안서 각 권의 원본에는 표지에 “원본”임을 표시한 후 다음 쪽에 제안업체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한다.
- 모든 제안서 사본에는 표지에 “사본”임을 표시한 후 표지 다음 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제안 업체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찍어 제출한다.

## 6)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 중 상충되는 내용은 KIND의 해석에 따른다.
-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각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명확히 오류가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하점을 부여하여 처리한다.
- 제출자료에 대한 허위기재 판단은 KIND의 해석에 따른다.

□ 필요할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3) 제안서 구성 및 목차

□ 제안서 심사 및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제안업체는 다음과 같은 제안서의 구성과 목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1>
- 협약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2>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3>
- 서약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4>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양식5>

#### 2) 제안서

-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제안서 제1권 양식>
-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제안서 제2권 양식>
- 제3권 첨부서류
  - 영업보고서(최근 결산일 기준 직전 3년)
  - 집합투자업 인가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개인별 이력서 : 재직증명서(대표이사 확인 필)
  - 자격증명서 : 금융투자협회 등록인력 확인서류(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사본 혹은 증빙서류(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CFA, FRM, CAIA 등)
  - 업계경력증명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불가인력에 한해 경력증명서)
  - 이직 확인서(이직 예정자에 한해 제출하며 본인이 서명날인)
  - 투자협약서 및 투자의향서(투자대상\*, 투자금액, 투자시기,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법인인감 날인 필)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6)>

\* ① 하위펀드 전부에 균등 투자(금액 또는 비율), ② 제안형 펀드에만 투자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

- 관련자료 및 증빙자료(필요할 경우에 한함)

#### (4) 제안서 제출요령

- 제안서 제출은 입찰공고문을 참조한다.
- 제안서는 제안업체의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한다.
-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수량은 ‘표: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명’과 같으며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에 양식명을 기재한 전자형태의 파일을 PDF 파일의 형태로 문서구분(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기타문서 등)에 따라 제출하고,
- 제안서 제1권 및 제2권, 제안서 제3권을 각각 제본하여 다음의 제출수량(원본수량 및 사본수량)을 입찰공고에 따르는 접수마감일에 제출처에 방문 제출한다.  
\* e-발주시스템에 제출한 전자형태의 파일 전부를 USB 2개에 담아 방문 시 추가 제출 (정량평가 excel file은 나라장터에 업로드가 불가하므로, USB에 포함하여 제출 필수)

[표: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명]

제출서류	원본 수량	사본 수량	비고	양식이름
<b>I. 입찰참가신청서류</b>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1)>
2. 확약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2)>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3)>
4. 서약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4)>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류(양식5)>
6. 관련업 인가 증빙서류 등	각 1부	-		
<b>II. 제안서</b>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1부	15부		<제안서 제1권 양식>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1부	15부		<제안서 제2권 양식>
3. 보수율 제안 (가격투찰)				입찰금액 전자입력
4. 제3권 첨부서류	*	2부		

\*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사본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수량을 포함하여 3부를 제출할 것

\*\* 원본 전체 및 사본 표지의 다음 장에만 사명 표기 가능, 제안서 사본에 업체명 표기 발견 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3점 감점함

### 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제안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장터 가격입찰 시 전자적 방식으로 그 지급의 확약을 하여야 한다.

□ 협상이 성립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자는 보증금 산정 기준\*에 따른 입찰보증금 상응액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보증금 산정 기준: 6,000억원 x 제안 보수율 x 5년 x 5% 이상

### 2) 제안서 표시

□ 제안업체가 제출할 제안서 본문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상자에 넣은 후 상자 겉면에 “PIS 펀드 주간운용사 제안서” 라는 문구와 함께 제안업체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3) 제안서 제출 마감

□ 제안서는 입찰공고에 따른 제안서 제출 일정을 준수하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관리본부(Three IFC, 50층)에 접수하여야 한다.

### (5) 제안서 수정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제안업체의 추가적인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제안서 제출 마감 후에 KIND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 제안업체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제안을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제안설명회

- 제안서 내용의 검토 및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회를 실시한다.
- 일시 : 입찰공고에 의함
- 대상 : 제안서 정량평가 상위 3개사
- 제안설명회 시간은 질의응답시간을 포함하여 업체당 50분 이내로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설명회 참가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7) 제안서의 효력

- 주간운용사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과 KIND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다르게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8)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

- 모든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은 KIND로 귀속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
- KIND는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이나 인용한 수치 등을 향후 PIS 펀드 운영에 참조 또는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KIND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KIND는 각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다른 제안업체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9) 제안업체 정보의 비밀유지

- KIND는 제안서 마감 시간까지 제안서 접수 현황이나 제안업체의 정보에 대해서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10) 제안서 작성비용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KIND는 제안업체의 제안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 제3장 제안서 평가부문 구성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에 PIS 펀드의 운용 구조, 주간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주간운용사로 선정되는 것을 전제로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업체는 주간운용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고, 준비가 완료된 경우 KIND에 보고하여야 하며, KIND는 준비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펀드운영협의회 심의를 요청하여 업무개시를 승인한다.

### 제1절 기술능력 부문

#### 1. 제1권, 정량적 요소에 대한 기술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제안서 제1권 양식에 제시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 붙임 1 주간운용사 선정 정량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 2. 제2권, 정성적 요소에 대한 제안

- PIS 펀드의 조성·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제안서 제2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단, 분량은 3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정도의 시간 제한을 염두에 두고 작성되어야 한다.
  - 붙임 2 주간운용사 선정 정성평가 세부기준을 참조한다.

## 제2절 가격(보수율) 부문

□ 평가대상 가격은 제안업체가 제시한 보수율로 한다.

- 제안업체는 보수율 산정시 사업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 제안업체는 7. 위수탁계약의 주요 조건-(4) 보수율에 상술된 보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격 투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가격 투찰 시 전자파일로 첨부하여야 한다.

### ○ 보수율 투찰시 유의사항

- 나라장터 보수율 투찰시에는 실제 제안보수율에 100,000,000을 곱하여 투찰하여야 함.
  - ※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이며, 투찰단위는 나라장터상 투찰 단위(원(₩))에도 불구하고 퍼센트(%)로 간주
  - ※ 따라서 나라장터 투찰 보수율에 100,000,000을 나눈 값이 실제 제안수수료율이 됨  
⇒ 예) 15bp 제안 시 투찰가격으로 15,000,000을 입력[0.15\*100,000,000]
- 계약금액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금액으로 실제로 계약금액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펀드운영협의회는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증감, 시장 상황 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간운용사 보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장 제안서 평가

## 제1절 주간운용사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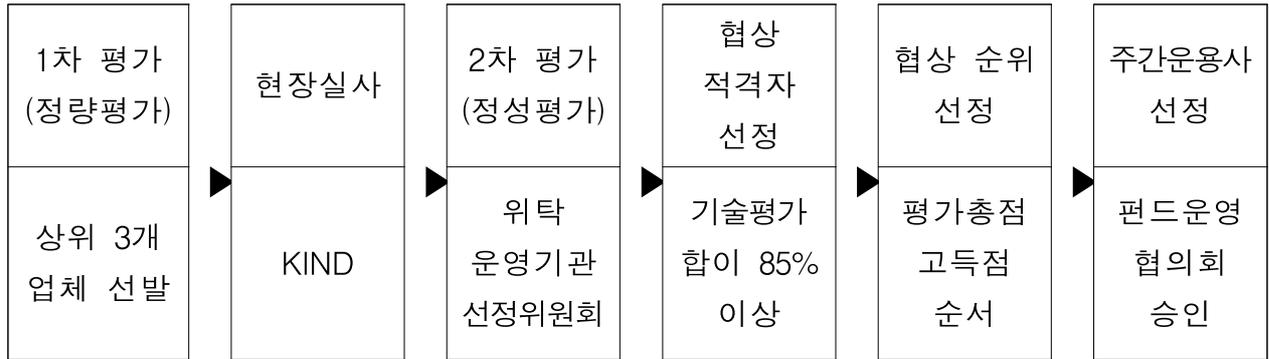
- KIND는 특정 제안업체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협상절차를 거쳐 주간운용사로 확정하며 제안내용, 국가재정법령 및 관련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의 주간운용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주간운용사의 선정원칙 및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주간운용사 선정원칙

- KIND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주간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제안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KIND의 심사규정과 심사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 주간운용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한다.
  
  - 도덕성을 겸비하고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2. 주간운용사 선정절차

□ 주간운용사 선정 관련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안서 접수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양식과 내용을 기초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찰공고문 및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안서를 접수 및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을 참조한다.

□ 1차 평가(정량평가)

- 정량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본 제안요청서의 “제2장 제안업체 자격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건에 적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본 평가대상 업체의 상위 3개 업체를 선발하는 절차이다.
- 입찰에 참여한 기관이 2개사인 경우 양사에 대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 제안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적격 사항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제안서 평가 또는 위수탁계약 체결 및 향후 업무 수행중에라도 발견된 경우, 모든 자격은 상실되고 진행과정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현장실사

- 현장실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추후 협상대상자로서의 결격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이다.
- 정량평가 결과 정성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 2차 평가(제안서 정성평가)

- 위탁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펀드운영협의회 관련 제규정에 따라 구성된다.
- 위탁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사전에 정의된 평가항목과 평가표를 근거로 평가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입찰에 참여한 기관이 2개사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정량, 정성)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선정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후 5일 이내에 협상적격자 중에서 평가총점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동점자의 경우 기술능력 평가지표 중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운용전략 (20점) ▶ 운용전문성 (15점) ▶ 민간투자자 투자유치 목표금액 (10점)  
▶ 주요계약조건 (10점) ▶ 운용자산 (10점) ▶ 인적자원 (5점) ▶ 내부통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5점) ▶ 대고객서비스 (5점) ▶ 재무안정성 (5점) ▶ 보수율 적정성 (5점)

#### □ 주간운용사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최고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하여 협상절차를 진행하며, 협상의 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펀드관리전문기관(KIND)는 협상을 통해 사업계획 등의 계약 조건 등을 결정하여, 계약의 내용은 펀드운영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절 평가

### 1. 평가의 개요

#### (1) 평가의 기본 목적

- KIND가 PIS 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주간운용사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평가의 기본 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심사한다.
-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1개 업체 단독 제안 시는 유찰하고 재공고를 실시한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 공개모집에서 응찰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재모집을 실시하고, 재모집 결과 응찰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

#### (3) 평가의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제안서의 정량평가를 통해 본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1차적으로 선발한 뒤 해당 업체들에 한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 정량평가를 거친 제안업체에 대하여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 제안의 내용에 대해 정성평가를 수행하며, 그 평가는 위탁운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행한다.

- 위탁운영기관 선정위원회는 KIND가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 평가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정량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세부평가항목별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 입찰에 참여한 기관이 2개사인 경우 각 지표별 표준화점수에 의한 배점 만점(40점)에 대하여 두 기관 중 상위기관은 40점 만점을, 하위 기관은 상위기관 지표에 비례하여 40점에서 차감된 점수를 산정한 후 배점의 60%를 가산한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ex) 재무안정성-총자산순이익률(2.0)

A사 = 150%, B사 = 50%인 경우,

A사 =  $2.0 \times 60\% + 2.0 \times 40\% \times (150\% / 150\%) = 2.0$

B사 =  $2.0 \times 60\% + 2.0 \times 40\% \times (50\% / 150\%) = 1.47$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등급간 배점은 최적합(100), 적합(90), 보통(80), 미흡(70), 부적합(60) 비율로 평가한다.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 가격(보수율)에 대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

식 방법에 따라 입찰가격의 평점을 계산한다.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정량, 정성)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가운데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2. 평가항목 및 배점

□ 협상대상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크게 “기술능력 평가(90점)”, “가격 평가(10점)”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평가(30점)

구 분	평가항목	
	재무안정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자산이익률(ROA) (2)</li> <li>▪ 자기자본이익률(ROE) (2)</li> <li>▪ 자기자본비율 (1)</li> </ul>
정량평가 (30점)	운용자산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순자산총액 3년 평균 (2)</li> <li>▪ 총 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 (2)</li> <li>▪ 인프라 자산 또는 재간접펀드 총 순자산총액 3년 평균 (3)</li> <li>▪ 해외자산 총 순자산총액 3년 평균 (3)</li> </ul>
	인적자원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 운용관련 인원수(2)</li> <li>▪ 전담 운용관련 업계경력 가중인원수 (3)</li> </ul>
	민간투자자 투자유치 목표금액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및 제안형 펀드 민간투자자 투자유치 목표금액 (10)</li> </ul>

- 정성평가(60점)

구 분	평가항목		
<제1장> 보수율 적정성 (5)	보수율 적정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수율 산정체계 및 적정성</li> </ul>		
<제2장> PIS 펀드에 대한 이해 및 관리능력 (40)	운 용 전 략 (20점)	PIS 펀드 이해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S 펀드 관련 분석 및 이해도</li> </ul>
		모태펀드 운용전략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운용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li> <li>■ PIS 펀드 투자정책과의 부합 정도</li> </ul>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li> </ul>
<제2장> PIS 펀드에 대한 이해 및 관리능력 (40)	운 용 전 문 성 (15점)	운용능력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분야 및 재간접 펀드 운용성과</li> <li>■ 제안하고 있는 전략과 직접 관련된 운용 경험</li> <li>■ 기관투자자 및 해외투자자 유치 실적</li> <li>■ 투자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li> </ul>
		모태펀드 운용 전문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운영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구성, 운영 및 전문성,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등</li> </ul>
		제안형 펀드 운용 전문성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형 펀드 운용인력의 구성, 운영 및 전문성,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등</li> </ul>
	내부통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절차별 전담조직 운영상의 독립성</li> <li>■ 내부통제관리체계의 적정성</li> <li>■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li> <li>■ 사후관리시스템(자산평가, 모니터링 절차 등)</li> <li>■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방지 구조의 적정성</li> </ul>	
<제3장> 주요 계약 조건 및 지원서비스 제공 (15)	주요계약조건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운용사의 매입약정 규모</li> <li>■ 민간투자자 투자유치 규모 및 실현가능성</li> <li>■ 모태펀드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및 목표 부합성</li> <li>■ 모태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 및 효과성</li> </ul>	
	대고객서비스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ND와의 업무 협력 체계의 적정성</li> <li>■ 대고객서비스 조직 구축방안</li> <li>■ 시장 리서치 등 제공 가능 여부</li> <li>■ 기타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li> </ul>	

○ 가격평가(10점)

구 분	평가항목	
가격 평가 (10점)	운용보수율 (10점)	■ 운용보수율 제시

**1. 재무안정성 (5점)**

□ 기준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 자료기준일 : 공고일 기준 최근 연말 결산일

〈재무안정성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산식	비고
총자산이익률 (ROA)	2.0	당기순이익 / 자산총계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사용 (자산총계,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이익률 (ROE)	2.0	당기순이익 / 자본총계	
자기자본비율	1.0	자본총계 / 자산총계	

- 1) 최근 3개년 자료의 단순평균값을 사용
- 2)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이전 자료는 합산 처리하며, 모회사에 의해 실질적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경우 연결이후 지분율을 반영하여 모회사에 합산처리함

□ 재무안정성

- 제안업체가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어 있는 자산총액, 자본총액(=자기자본), 당기순이익을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함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자료를 사용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한 후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2. 운용자산 (10점)

□ 기준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 자료기준일 : 2019년 3월말

### <운용자산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산식	비고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2.0	$\frac{\sum(3년\ 기간의\ 월말\ 총\ 순자산총액)}{36}$	▶ 매 월말 기준 (36 개월)
총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	2.0	$\frac{\sum(3년\ 기간의\ 월말\ 총\ 순자산총액\ 증가율)}{36}$	▶ 매 월말 기준 (36 개월)
인프라자산 또는 재간접펀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3.0	$\frac{\sum(3년\ 기간의\ 월말\ 인프라자산\ 또는\ 재간접펀드\ 순자산총액)}{36}$	▶ 매 월말 기준 (36 개월)
해외자산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3.0	$\frac{\sum(3년\ 기간의\ 월말\ 해외자산\ 순자산총액)}{36}$	▶ 매 월말 기준 (36 개월)

- 1) 총 순자산은 공/사모 운용규모를 지칭하며, 연기금투자폴 운용규모(통합펀드)는 제외
- 2) 합병법인의 경우 합병 이전 자료는 합산 처리하며, 모회사에 의해 실질적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경우 연결이후 지분율을 반영하여 모회사에 합산처리함
- 3) 인프라 자산 또는 재간접 펀드, 해외자산의 경우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인프라 자산 또는 재간접 펀드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반영하여 산출

### □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2.0점)

- 기준일 이전 최근 3년 동안의 매 월말 총순자산총액을 합산하여 36으로 나누어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총순자산 3년 평균』 을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 총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2.0점)

- 기준일 이전 최근 3년 동안의 기간을 월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월말 총순자산 총액을 측정
- 제안업체별 36개 구간의 전월말 대비 총 순자산 증가율 계산  
 :  $\text{총순자산 증가율(\%)} = (\text{당월말 순자산총액} / \text{전월말 순자산총액} - 1) \times 100$
- 36개 구간의 총 순자산 증가율을 합산한 뒤에 36으로 나누어 『총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 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총순자산총액 3년 증가율』을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 인프라 자산 또는 재간접 펀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3.0점)

- 기준일 이전 최근 3년 동안의 매 월말 인프라자산 및 재간접 펀드의 총순자산 총액을 합산하여 36으로 나누어 『인프라자산 또는 재간접 펀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인프라자산 또는 재간접 펀드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을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해외자산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3.0점)

- 기준일 이전 최근 3년 동안의 매 월말 총순자산총액을 합산하여 36으로 나누어 『해외자산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산출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자산 총순자산총액 3년 평균』 을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3. 인적자원 (5점)

□ 기준 :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및 제안업체 제출자료

□ 자료기준일 : 2019년 3월말

#### <인적자원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	산식	비고
전담운용관련 인원수	2.0	전담 운용관련 인원수	▶ 제안업체가 제안한 인원수
전담운용관련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	3.0	$\sum_{i=1}^n \text{지원인원의 근속연수 상위 50\%} \times \text{업계경력가중치}_i$	▶ 제안업체가 제안한 인원의 업계 경력 가중치 10년 미만 : 해당 경력 10년 이상 : 10.0

#### □ 전담 운용관련 인원수(2.0)

- 『전담 운용관련 인원수』는 대상업체가 제안하는 주간운용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수로 성명, 직급, 업계경력 모두 기재(타사에서 이직 예정인 인원 포함)
  - ▶ 전담 운용관련 인력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 조사분석인력 및 위험관리인력은 조사분석(리서치) 및 위험관리(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으로 한정
  - ▶ 제안업체는 해당 자격과 관련한 증명서를 제출
  - ▶ 제안업체는 제안하는 전담인력에 대하여 재직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타사 이직 예정자의 경우 확인서 제출
    - \* 이직 예정자는 확인서에 현 소속기관, 직위 및 향후 제안사에 전담인력으로 이직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날인
  - ▶ 해외지사 근무인력도 전담 운용인력으로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으나, 업무개

시이후 부터는 국내에 상주하여야 함

- ▶ (이행보장 방안) 제안서와 실제 배치인력이 현저히 다를 경우 우선협상지위 박탈, 계약 해지 등 제재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전담 운용관련 인원수』를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 전담 운용관련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3.0)

- 『전담 운용관련 인원수』에 포함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업계경력을 가중
  - ▶ 업계경력은 금융투자인가업자, 금융투자등록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근무한 경력에 한함(근무경력 동안 해당 업체가 위의 인가업종에 해당해야 함)
  - ▶ 제안업체는 해당 경력과 관련한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발급불가인력에 한해 경력증명서 제출
    - \* 이직 예정자의 경우도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업계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경력년수(월단위까지 계산)로 가중하며,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치를 10.0으로 함(해당경력이 3년 6개월인 경우 가중치로 3.5를 부여, 10년 6개월의 경우 가중치는 10)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전담 운용 관련 업계 경력 가중인원수』를 표준화
-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점수법을 적용하여 점수부여(배점의 40%를 만점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화점수에 배점의 60%를 가산), 지표 값이 높은 순서대로 배점

## 4. 민간투자자 투자유치 목표금액 (10점)

- 제안업체가 하위펀드 조성의 원만한 조성을 위하여 고유자금 및 민간투자자 발굴을 통한 투자유치 약정총액을 의미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
- 투자 약정총액에 포함되기 위하여 제안사는 투자확약서 (LOC) 혹은 투자의향서 (LOI)를 제출해야 함
  - LOC 제출 금액의 100%, LOI 제출 금액의 50%를 반영하되, LOI 제출액을 기준으로 한 점수는 5점을 상한으로 함

민간투자자 투자금액 (억원)	점수 예시	
	LOC 제출분	LOI 제출분
100	0.5	0.25
500	2.5	1.25
1,000	5	2.5
1,500	7.5	3.75
2,000	10	5
5,000	10	5
10,000	10	5

\* 억원 미만 절사하며, 민간투자자 제출대상은 자본시장법 제9조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한정함

- 제출된 투자확약서 또는 투자의향서의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추가 질의 등의 확인절차를 통해 상기 민간투자자 투자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될 수 있음

<p>1. 보수율 적정성 (5점)</p>	<p><input type="checkbox"/> 보수율 산정체계 및 적정성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된 보수율 구조 및 책정근거,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인부합적인 보수율 구조</li> <li>▶ 보수율 구조의 산정 근거 및 타당성</li> <li>▶ 보수율 제시근거 및 타당성 (불합리한 덤핑적 보수율 제시한 경우 페널티 포함)</li> <li>▶ 보수율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요인 변동에 따른 보수율 산정체계 제시의 적정성</li> </ul> </li> </ul>
<p>2. PIS 펀드에 대한 이해 및 관리능력 (40점)</p>	<p><input type="checkbox"/> 운용전략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S 펀드 이해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S 펀드 관련 분석 및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S 펀드 설립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li> <li>· PIS 펀드 사업내용 (운용구조, 운용체계 등)에 대한 이해</li> <li>· PIS 펀드 주간운용사 역할에 대한 이해</li> <li>· PIS 펀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제시</li> </ul> </li> </ul> </li> <li>○ 모태펀드 운용전략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운용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운용철학 및 운용목표</li> <li>· 하위펀드 분야별 투자전략 (세부 투자 분야 및 지역별 재원 배분 등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연도별 투자목표 등 투자실행 계획, 하위펀드 유동화 지원 등 회수 전략, 국내외금융 네트워크와 협력 전략, 민간투자자 발굴전략 등)</li> <li>· 모태펀드 투자리스크 관리전략 (환 관리전략, 손실 최소화 전략 등)</li> <li>· 하위운용사 선정 및 관리계획 (하위운용사 선정절차 및 선정 기준, 섹터별 하위운용사의 필요역량 분석, 하위운용사 교체 및 관리방안, 하위펀드 적시 모니터링 방안, 성과측정 및 피드백, 경쟁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평가 방안, 하위펀드의 투자 촉</li> </ul> </li> </ul> </li> </ul>

	<p>진을 위한 방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위 운용사 및 민관 투자자 간 협력 등 시너지 창출 방안</li> <li>▶ PIS 펀드 투자정책과의 부합 정도</li> <li>▶ 기타 모태펀드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li> </ul> <p>○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li> <li>· 제안형 펀드의 운용철학 및 운용목표</li> <li>· 제안형 펀드의 투자전략 (세부 투자 분야 및 지역별 자원 배분 등 적정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투자대상 발굴 전략, 투자방법 및 투자구조 수립 전략, 연도별 투자목표 등 투자실행계획, 사후관리 전략, 국내외금융 네트워크와 협력 전략, 민간투자자 발굴전략 등)</li> <li>▶ 기타 제안형 펀드 운용전략에 관한 사항</li> </ul> <p>□ 운용 전문성 (15)</p> <p>○ 운용능력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프라 펀드 및 재간접펀드 운용성과</li> <li>· 국내외 인프라 펀드 및 재간접펀드 (모자형 제외) 투자 운용 성과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 투자 규모 및 투자수익률, 투자방법 및 회수방법 등 운용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적 기재)</li> <li>▶ 기관 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 유치 실적</li> <li>▶ 제안하고 있는 전략과 직접 관련된 운용 경험</li> <li>· 모태펀드 운용전략, 하위펀드 운용전략을 구분하여 기재</li> <li>▶ 투자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li> <li>· 투자 의사결정체계의 구조 및 투자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의사결정체계의 합리성 및 투명성, 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의사결정 방식의 적절성 등)</li> <li>▶ 기타 운용성과에 관한 사항</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운용 전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의 구성, 운영 및 전문성</li> <li>· 투자계획/투자실행/평가 프로세스/위험관리 등 업무별 전담 인력 규모 및 구체적 담당업무, 개인별 경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인력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li> <li>· 투자계획/투자실행/평가 프로세스/위험관리 등 업무별 회사 내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li> <li>·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의 특성 및 구축계획</li> <li>▶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li> <li>· 운용기간 동안 구성 인력의 전문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포함 (우수인력 이탈방지 및 유치방안, 구성 인력의 동기부여 방안,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li> <li>▶ 기타 운용 전문성에 관한 사항</li> </ul> </li> <li>○ 제안형 펀드 운용 전문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인력의 구성, 운영 및 전문성</li> <li>· 개인별 경력, 유사업무 수행 경험, 인력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li> <li>▶ 운용인력에 대한 보상체계</li> <li>· 운용기간동안 구성 인력의 전문성 유지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포함 (우수인력 이탈방지 및 유치방안, 구성 인력의 동기부여 방안,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li> <li>▶ 기타 운용 전문성에 관한 사항</li> </ul> </li> <li>□ 내부통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절차별 전담조직 운영상의 독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조직 및 인력의 의사결정·인사·정보흐름의 독립성</li> <li>▶ 운영조직의 사내 방화벽 확보</li> <li>▶ 운용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li> </ul> </li> <li>○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적절성(기능조직 역할)</li> </ul> </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3년간 관리·감독기관의 제재·지적사항, 소송발생 현황 (자료제출 필요)</li> <li>○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위험관리지침과 위험관리 방안 수립</li> <li>▶ 위험관리 시스템 개발계획의 내용</li> <li>▶ 모태펀드 및 하위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및 적시 모니터링 방안</li> <li>▶ 위험관리조직의 전문성</li> <li>▶ 위험관리조직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수준 및 의견반영 수준</li> </ul> </li> <li>○ 이해관계자 간 이해상충방지 구조의 적정성</li> <li>○ 기타 내부통제관리체계 및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li> </ul>
<p>3. 주요 계약조건 및 KIND에 대한 지원 방안 (15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주요계약조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운용사의 매입약정 규모</li> <li>○ 민간투자자 투자유치 규모 및 실현가능성</li> <li>○ 모태펀드 성과평가 기준 및 목표 부합성</li> <li>○ 모태펀드 투자자 보호 방안 및 효과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대고객서비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ND와의 업무 협력 체계의 적정성</li> <li>○ 대고객 서비스 조직 구축방안</li> <li>○ 시장 리서치 등 제공 가능 여부</li> <li>○ 기타 고객서비스에 관한 사항</li> </ul> </li> </ul>

① 각 평가항목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감안하여 제안업체별 표준화 값을 산출

- (표준화 값) =  $( X - \mu ) / \sigma$

where X : 각 제안업체별 평가항목점수

$\mu$  : 전체 제안업체 평가항목점수 평균값

$\sigma$  : 전체 제안업체 평가항목점수 표준편차 값

② 표준화 값의 구간을 -2.5와 +2.5로 구분하여 표준화 점수를 부여

- 표준화 값 -2.5에서 2.5 사이,

(표준화 점수) =  $(95/5) * (\text{표준화 값} + 2.5) + 2.5$

- 표준화 값 -2.5 미만,

(표준화 점수) =  $2.5 / (-2.5 - \text{최소 표준화 값}) * (\text{표준화 값} + 2.5) + 2.5$

- 표준화 값 2.5 초과,

(표준화 점수) =  $2.5 / (\text{최대 표준화 값} - 2.5) * (\text{표준화 값} - 2.5) + 97.5$

③ 표준정규분포(Standard Normal Distribution)에서 신뢰도 99%에 해당하는 Cutoff 가 대략  $\pm 2.53$  이므로 표준화 값을  $\pm 2.5$ 로 나누어 신뢰도 99%를 벗어나는 값을 극단 값으로 처리

④ 특정 평가항목에 있어 해당점수가 없는 운용사를 0점 처리를 하면 이 또한 극단 값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평가항목 내 최하점수를 획득한 제안업체와 동일한 점수를 부여

**붙임 4****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begin{aligned} \text{평점} =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 + \left[ 2 \times \left( \frac{\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right] \end{aligned}$$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